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 27.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주택단지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되, 지역 주차수요의 특성,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인용된 법률에 대한 준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나.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규정 정비(안 별표2 제5항)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현행) 85㎡이하 55㎡당 1대, 85㎡초과 43㎡당 1대, 원룸 세대당 1대

(변경)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전용면적 85㎡ 이하 : 88㎡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전용면적 85㎡ 이하 : 55㎡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

다.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4. 입법 예고 기간 : 2026. 1. 27. ~ 2. 1.(5일간)

5.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

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 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조문

의견

2. 의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법 영 제8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주차구획선의 표시등)”을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을 “시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같은법 제9조”를 각각 “같은 법 제9조”로 한다.

별표 2의 제5항 중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85㎡이하 55㎡당 1대, 85㎡초과 43㎡당 1대, 원룸 세대당 1대”를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전용면적 85㎡ 이하 : 88㎡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전용면적 85㎡ 이하 : 55㎡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12호 중 “비고 제13호에 따라”를 “비고 제11호에 따른”으로 하고, “비고 제13호 각 목의”를 “비고 제11호 각 목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법 영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격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 「도로교통법」 제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생략)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 ----- ----- ----- -----
제1항 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3개월 단위로 선평	--- 제7조제3항에 따른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생략)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
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
위) ①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
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②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
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
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산정한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
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②-----
----- 시행-----
-----.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
위) 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
정기준) ①-----

1. 2. (현행과 같음)

3. -----

-----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
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
다.

1.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
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5. (생략)

-----.

4.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 같은법 제9조-----

-----.

4. 5. (현행과 같음)

<개정 2019. 02. 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illegible]

【별표 2】 <개정 2019. 02. 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50㎡당 1대(시설면적/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2-1. 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2.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체육도장, 바목공예무시설, 사목주민공동이용시설 등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스포츠관, 바목사건관, 카목개원, 목목공연소, 타목도서관, 하목도서실, 거목일반업무시설, 너목다중생활시설 등을 위한 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사우나, 다목적체육관, 체육도장, 바목공예무시설, 사목주민공동이용시설 등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스포츠관, 바목사건관, 카목개원, 목목공연소, 타목도서관, 하목도서실, 거목일반업무시설, 너목다중생활시설 등을 위한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 설 물	설 치 기 준
4.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公館)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1+((\text{시설면적}-100\text{㎡})/50\text{㎡})]$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85㎡이하: 55㎡당 1대 ○ 85㎡초과: 43㎡당 1대 ○ 원룸 세대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 명당 1대 (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 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 · 수녀원 · 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 ·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

시 설 물	설 치 기 준
4.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公館)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1+((\text{시설면적}-100\text{㎡})/50\text{㎡})]$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전용면적 85㎡ 이하 : 88㎡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 전용면적 85㎡ 이하 : 55㎡당 1대 ·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 명당 1대 (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 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
--	---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

-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
---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1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	---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	--